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알림

1.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-9906(2017.09.20.) 「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」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,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2018년 생활임금 수준 : 9,211원(시급)/ 1,925,099원(월급)

나. 적용방법

-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
- 생활임금 기준월액 1,925,099원보다 생활임금(통상임금) 월액 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

다. 적용대상

- 서울시 및 투자·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
※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제외
-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
※ 수익창출형,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
-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

라. 적용기간 : 2018.1.1. ~ 2018.12.31.

마. 행정사항

-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 인식 가능하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2018년도 생활임금 게시 및 위반 시 생활임금 신고센터에 제보 가능하도록 안내 (생활임금 신고센터 ☎ 2133-5415)

- 붙임 : 1.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.
2.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.
3.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. 끝.

서울교통공사





수신자 가1~가51,나1-2, 다1, 마27, 아1-3,나1-아19,나1-아19,자1-자5

대리 이수경

팀장 곽창현

처장 09/26
박찬명

협조자 부장 조금미

시행 노사협력처-1569 (2017.09.26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174 전송 02-6311-4023 / 2120129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